# 별첨1

#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	내역명	(개별 4)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공통요건은「별지 제5호」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일반 바우처	• (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적용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분류기호 "C" 업종 적용 <참고 2>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내어			
	내수기업	•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바우처	수출 초보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성장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수출 강소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스마트	고도화1	• (신청자격)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공장	고도화1 (동일수준)	• (신청자격)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기업(1회 한함)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별첨2

#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을 영위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회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제한된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4>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②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 • 예외③ : 최근 결산면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ul> <li>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li> <li>・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lt;참고 3&gt;을 영위하는 기업</li> <li>・「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예외: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회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li> <li>・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에제한된 기업</li> <li>・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lt;참고 4&gt;을 초과하는 기업</li> <li>・예외①: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li> <li>・예외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li> <li>- 예외③: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li> </ul>
<ul> <li>「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회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li> <li>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에제한된 기업</li> <li>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lt;참고 4&gt;을 초과하는 기업</li> <li>예외①: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li> <li>예외②: 「중소기업협동조합」상의 협동조합</li> <li>예외③: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li> </ul>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대상①: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 대상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③: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①: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②: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③: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예외④: 투융자심의위원회/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예외④: 투융자심의위원회/스케일업금융 선정탈락 후, 타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대상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 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5호」참조>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대상③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예외: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잡수출 50만불 이상,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②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③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②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②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수출

# 바우처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세포ㅂ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메 犬 모메 H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스마트 공장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 <u>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u>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Α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 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	N	평균매출액등	
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권 이야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400 탁권 이야	
44. 교육 서비스업	Р		

####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C102. 음료 제조업C1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 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 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 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다)C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9. 1차 금속 제조업C2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2. 전기장비 제조업C28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원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혀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 호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 E
의한다)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3. 구중인법 그 그 그 그 이상의 이동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 역원 이 여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Р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학원 이야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융자제외 업종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원가능 업종)46102 中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나행성, 보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나행성, 보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나행성, 보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건 사업
제조합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건 사업
33409 中 도막기계 및 사행성, 물건선 오닥기구 제조합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건 사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건 사업
AC 47 h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u>-</u> 지
│ ┌매 및 ᄉ매어 │───────│사행정, 사시정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수류, 담매 소매업	
" · · · · · - 46331, 3  수튜, 담배 노매법(난, 수튜 중개법 먼어보유 기업은 시원 가능	<del>5</del> )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	웨어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1 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지합 시원 시비교합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어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여기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 는 경우 지원가능)	당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u>-</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이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 (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78.0	500.0	1000.0
2	A03(어업)	252.9	500.0	1000.0
3	B(광업)	167.4	500.0	1000.0
4	C(제조업)	121.9	365.7	731.4
5	C10(식료품)	150.7	452.1	904.2
6	C11(음료)	136.3	408.9	817.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9	395.7	791.4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3.0	399.0	798.0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21.5	364.5	729.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59.2	477.6	955.2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9.1	357.3	714.6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7.7	383.1	766.2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0.7	392.1	784.2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5	295.5	591.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9.3	207.9	415.8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0.3	360.9	721.8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9.6	298.8	597.6
18	C24(1차 금속)	134.6	403.8	807.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8.0	414.0	828.0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2.1	306.3	612.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1.7	275.1	550.2
22	C28(전기장비)	108.3	324.9	649.8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8.5	355.5	711.0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61.6	484.8	969.6
25	C31(기타 운송장비)	313.7	500.0	1000.0
26	C32(가구)	164.8	494.4	988.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0.2	360.3	721.2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5.2	495.6	991.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20.1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0.9	362.7	725.4
31	F(건설업)	107.9	323.7	647.4
32	G(도매 및 소매업)	136.8	410.4	820.8
33	H(운수 및 창고업)	174.2	500.0	1000.0
34	l(숙박 및 음식점업)	381.0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19.6	358.8	717.6
36	L(부동산업)	445.1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5	376.5	753.0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6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3.4	490.2	980.4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2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4.5	500.0	1000.0

<sup>1)</sup>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